

研究論文

高麗後期 內侍制의 變化*

김재명**

I. 머리말	III. 麗末 內侍의 成衆官으로의 變質
II. 元 干涉期 內僚의 內侍職 進出	IV. 맺음말

I. 머리말

흔히 高麗의 內侍는 주로 文武官 出身이었음에 반해 朝鮮의 그것은 宦官 內侍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이해는 世宗 말 이후에나 타당할 뿐, 그 이전의 鮮初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內侍院과 內侍府의 名號가 같아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자 內侍院을 內直院으로 개칭한 사실¹⁾에 주목해 보면 世宗 초까지만 해도 內侍院 소속의 內侍는 확실히 內侍府 소속의 宦官과는 구별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鮮初의 內侍는 보통 胥吏 출신의 成衆官으로서 대략 麗末부터 그러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

따라서 일단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만으로도 본래 文武官이던 高麗의 內侍가 麗末 어느 때가 胥吏 출신의 成衆官으로 변모했으리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 이 논문은 2003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학교 국사교육과 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1) 『世宗實錄』 卷 108, 27年 4月 庚午 108:10b(4:617).
 2) 韓永愚, 「朝鮮初期의 上級胥吏 成衆官」, 『東亞文化』 10(1971).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變化 過程과 背景에 큰 관심을 갖고 깊이 穿鑿한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몇몇 연구에서 ‘賤隸 출신의 內僚가 元 干涉期 이후 다수 內侍로 진출했다’는 사실적 구명과 함께 恭愍王 때의 內侍府 설치가 어떻게든 內侍의 變質에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³⁾ 그러므로 忠烈王 이후 內僚의 內侍 進出이 활발해지게 된 時代 背景이라든가, 文武官 출신의 內侍가 麗末에 成衆官으로 변모하게 된 구체적 과정이나 이유 등과 같이 정작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本稿는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고자 작성된 글이다. 따라서 論議는 자연히 忠烈王 初年을 전후해 內僚가 內侍職에 진출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를 가능케 한 정치적 요인을 穿鑿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忠宣王 때부터 內侍의 중심이 그간의 文官에서 武官에게로 옮겨진 사실과 그 이유를 살펴 본 뒤, 恭愍王 이후의 麗末에 또다시 武官 및 內僚 출신마저 사라지고 이른바 成衆官 內侍가 內侍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詳論해 보고자 한다. 資料의 零星함을 타하면서 무리한 推測과 臆斷으로 論旨를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미리 고백하며, 이에 대한 先學들의 叱正을 바란다.

II. 元 干涉期 內僚의 內侍職 進出

『高麗史』 選舉志에는 高麗의 內侍에 관한 중요한 資料가 하나 실려 있다.

A-㉠ 內侍院·茶房·司楯·司衣·司彝로 불리는 것들은 그 始置 時期를 상고할 수 없다. 明宗 16년에 重房의 武臣들이 內侍와 茶房에 兼屬하기를 요청하였으니 여기에 선발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다.⁴⁾

3) 姜愛子, 「高麗時代의 內侍에 對하여」(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1965) 및 金昌洙, 「麗代 內侍의 身分」, 『東國史學』, 11(1969). 더욱이 金昌洙는 “麗代의 內侍는 麗末에 와서는 宦官職으로 改定되었으며, 그럼으로써 그 質이 低下되고 賤視의 對象이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는 바, 文武官 出身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內侍가 恭愍王 때의 內侍府 設立을 계기로 成衆官이 아닌 宦官 內侍로 변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는 ‘成衆官選補之法’條의 序文과 明宗 16년의 기사가 그것이다.⁵⁾ 하지만 정작 ‘그 始置 時期를 알 수 없다고 함으로써 內侍制의 淵源에 대한 궁금증만을 지아 내고 말았다.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여기저기 散見되는 內侍 관련 자료를 모아 그 淵源 추적에 나선 것⁶⁾도 실은 이 때문이다.

사실 이 成衆官選補之法 序文은 일견 ‘高麗 內侍制의 淵源을 詳考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文宗 때의 內侍制 運營이 아주 모범적이었다고 극찬한 林完의 上疏⁷⁾ 뿐 아니라,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의 李齊賢 史贊⁸⁾까지를 함께 수록한 『高麗史』 編纂者들이 이를 모른 채 ‘內侍의 始置 時期를 상고할 수 없다’는 前提에 이어 곧바로 明宗 16년의 기사를 기술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이러한 고백과 편찬 태도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A-①은 어디까지나 成衆官⁹⁾의 選補에 관한 기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內侍가 麗初부터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司楯·司衣·司彝 등과 같은 成衆官으로서의 內侍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詳考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위 引用文에 이어 수록된 恭讓王 때의 두 기사 또한 成衆官으로서의 內侍 充員을 논의한 吏曹의 啓文이라는 점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司楯·司衣·司彝 등과 함께 이야기되는 內侍의 실체는 일단 成衆官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이런 內侍는 이전 특히 武人執權期 이전의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달랐을 가능성까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한편 ‘司楯·司衣·司幕·司彝·司饗 등의 愛馬¹⁰⁾는 高麗 末에 添設한 것’이라

4)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成衆官選補之法 75:41b(2:651).

5) 이 밖에 內侍 選拔에 慎重을 期해야 함을 주장한 恭讓王 때의 吏曹 啓文 둘이 더 실려 있는 바, 따라서 이 成衆官選補之法은 『高麗史』에서 內侍에 관한 기사를 가장 풍부하고도 집중적으로 수록한 곳이라 할 수 있다.

6) 姜愛子, 앞의 논문(1965) 및 朴漢男, 「高麗內侍에 관한 研究」(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2).

7) 『高麗史』 卷 98, 列傳 11, 林完 98:35b-6a(3:188).

8) 『高麗史』 卷 9, 世家 9, 文宗 3, 李齊賢贊 9:37b(1:199).

9) ‘무리를 이루는 벼슬아차란 뜻으로 어떤 고유한 官名이 아니라 同一 官署의 한 官職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씩 한 그룹을 지어 소속되어 있던 下級 벼슬아치에 대한 汎稱이다. 극히 예외적으로 品官도 있었으나 品外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韓永愚, 앞의 논문(1971) 참조

10) ‘愛馬’는 ‘成衆愛馬’의 약칭으로 成衆官과 同意異語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金昌洙 「成衆愛馬考」, 『東國史學』, 9·10(1966) 참조.

는 鄭道傳의 견해¹¹⁾에 비추어 볼 때 앞의 A-㉠에서 司楯·司衣·司彝와 나란히 언급된 內侍·茶房 또한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麗末에는 이미 成衆官으로 변모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高麗 末 이전에 內侍의 중심을 이룬 것은 文武官 출신으로 內侍가 된 소위 朝官內侍였는 바,¹²⁾ 이들을 司楯·司衣·司彝와 같은 品外の 成衆官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연히 前期 이래의 朝官內侍制가 麗末 어느 때가 品外官으로서의 成衆官을 중심으로 한 內侍制로 變質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겠는데, 그러면 그 變化의 과정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지금부터 朝官內侍를 핵심으로 하던 당초의 內侍制에서 品官인 文官과 武官이 차례로 이탈하고 끝내는 品外の 成衆官으로 변모해 간 일련의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資料에 먼저 주목해 보자.

A-㉠-① 李之氏는 禮安縣 사람으로 內僚로서 진출하였다… 元이 장차 日本을 征伐하려고 할 때 마침 李之氏가 將軍으로 있었는데, 征伐軍에 나가고 싶지 않아 드디어 免職을 청하기도 하였다.¹³⁾

㉠-② 드디어 必闇赤과 申聞色을 두고, 金周鼎과 參文學事 朴恒, …內侍將軍 李之氏, …大常府錄事 鄭玄繼 등으로 必闇赤을 삼았다¹⁴⁾

㉠ 金周鼎·張舜龍을 西海道에, … 郎將 金天固를 全羅道에 파견하여 인물들을 分揀토록 하고는 …, 그대로 天固를 內侍에 入屬시켰다 舌人으로 內侍가 된 것은 天固로부터 시작되었다.¹⁵⁾

A-㉠-①은 李之氏가 忠烈王 初年에 內僚 出身의 將軍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②는 같은 시기에 그가 또 內侍將軍이기도 했음을 전하는 資料이다. 이로 보아 이 무렵 李之氏는 內僚이기도 하고 內侍이기도 했다 하겠는 바, 그러면 그의 관료적 위상을 각각 표시하는 內僚와 內侍는 과연 어떤 관계였는가. 이러한 의문

11) 『太祖實錄』卷 5, 太祖 3年 2月 己亥 5:13b(1:59).

12) 金載名, 「高麗時代의 朝官內侍」, 『정신문화연구』 88(2002-2).

13) 『高麗史』卷 123, 列傳 36, 嬖幸 1, 李之氏 123:25ab(3:683).

14) 『高麗史』卷 104, 列傳 17, 金周鼎 104:45ab(3:303).

15) 『高麗史』卷 28, 世家 28, 忠烈王 1, 4年 7月 丁未 28:42a(1:584).

과 관련하여 일찍이 內僚는 곧 內侍의 異稱으로 高麗 後期에 등장하는 賤隸 出身의 內侍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¹⁶⁾ 하지만 內僚는 宦者를 포함한 賤隸 出身의 南班職으로 宮中에서 근무하는 僚屬을 지칭한다는 견해¹⁷⁾에 주목해 보면 李之氏는 그런 內僚로서 특별히 內侍가 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內僚와 內侍가 서로 구별되는 존재임을 시사하는 기록¹⁸⁾이 보일 뿐 아니라, 內侍가 아닌 內僚의 사례도 허다하게 찾아진다는 점에서 後者が 사실에 더 가까운 이해라고 보아야 하겠다.¹⁹⁾ 사실 A-㉔의 金天固의 경우도 舌人 出身으로 결국은 內侍가 되었지만 그 직전까지는 通譯人 出身의 郎將, 곧 단순히 內僚에 머물고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로써 忠烈王 初年을 前後하여 賤隸 出身의 南班職인 內僚가 새로 內侍에 入屬함으로써 文武官과 胥吏 및 散職者를 범주로 하던 기존 內侍의 外延²⁰⁾이 한 단계 더 확대되었음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이 무렵에 이처럼 內僚 出身의 內侍가 등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武人執權期 말에 벌어진 일련의 政治的 事件을 거치면서 內僚, 특히 宦者의 政治的 比重이 급부상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武人執權期 말의 政治적 사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무래도 崔氏政權의 마지막 執政者인 崔曄의 誅殺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政變을 주도하고 實權을 장악한 金俊의 姻戚 중에는 內僚 出身이 많았다. 金俊 본인이 賤隸 出身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의 丈人인 金衍이 內僚였고,²¹⁾ 妻三寸 金仁宣과 妻族인 朴文珙 모두 宦官이었던 것이다.²²⁾ 특히 金仁宣은 ‘衛社의 功이 있다고 일컬어질 정

16) 金昌洙, 앞의 논문(1969).

17) 洪承基, 『高麗貴族社會와 奴婢』(一潮閣, 1983), 363~364쪽 및 矢木毅 「高麗時代の內侍と內僚」 『朝鮮學報』, 184(2002).

18) 『高麗史節要』卷 20, 忠烈王 4年 11月 20:15b-6a(1:522). 이 자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洪承基, 위의 책, 364쪽 참조.

19) 그리고 보면 內僚는 대략 仁宗 때 林完의 上疏(『高麗史』卷 98, 列傳 11, 林完)에서 內侍와 대비적으로 기술된 ‘宦官給事’, 즉 謹慎少壯者 중에서 선발되어 주로 宮中の 洒掃를 담당하는 존재에 대한 後期的 표현이 아닐까 한다.

20) 金載名, 「高麗時代の內侍」, 『歷史教育』, 81(2002-1).

21) 『高麗史』卷 105, 列傳 18, 兪千遇 105:34a(3:325).

22) 『高麗史』卷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130:14a-8b(3:823-5).

도²³⁾로 崔瑄 除去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어느 시기 못지않게 宦官을 비롯한 內僚가 나름대로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內僚는 南班職 7品까지를 限職으로 한다는 限品 規定²⁴⁾에 걸려 6品 이상의 參職에 除授될 수 없었다. 高宗의 각별한 寵幸을 받은 宦者 金仁宣이 參職을 얻을 뻔하다 ‘잘못된 先例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名분에 밀려 결국은 좌절된 사실²⁵⁾이 그 단적인 예이다. 姻戚인 權臣 金俊의 지원과 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에 宦者를 중심으로 한 이들 內僚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돋보인 것은 10년 뒤에 있는 소위 戊辰政變에서였다. 先行 研究에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金俊을 제거한 이 戊辰政變은 王權을 恢復하려는 元宗의 주도 하에 林衍의 의해 실천되었는데, 이 때 왕의 側近인 몇몇 內僚가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家奴·通譯人 出身으로 郎將 벼슬에 있던 康允紹와 宦官인 金鏡·최은·金子廷 및 金子厚 등이 바로 그들인 바, 이들 중 金鏡과 최은이 정변 후 잠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지만 곧 實權을 장악한 林衍에 의해 誅殺되면서 王政復古는 무산되고 말았다.²⁶⁾

게다가 얼마 후 林衍에 의한 元宗의 廢位 事件까지 이어지면서 元宗은 더욱 암담한 孤立無援을 겪게 된다. 그러나 당시 朝廷 臣僚들은 거의 모두 모호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급급했다. 林衍이 元宗의 廢位를 거론하자 參知政事 俞千遇만이 이를 극력 반대했을 뿐, 侍中 李藏用은 遜位를 거론했고 다른 臣僚들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다. 또한 충분히 林衍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눈치를 보다 주저하고 만 同知樞密 趙璈의 예가 있는가 하면, 康允紹·李汾禧와 같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親王勢力이던 관료가 林衍에게 포섭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⁷⁾ 따라서 이런 曲折을 겪고 얼마 후 復立에 이어 王政復古

23)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宦寺之職, 高宗 45年 7月 75:20b(2:640).

24)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忠烈王 2年 閏 月 75:24b-5a(2:642-3).

25)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宦寺之職, 高宗 45年 7月 75:20b(2:640).

26) 金塘澤, 「林衍政權과 고려의 開京還都」, 『高麗의 武人政權』(國學資料院 1999) 참조

27) 崔瑄 除去, 戊辰政變 元宗 廢立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러 政治集團의 움직임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金塘澤, 위의 논문; 崔元榮, 「林氏武人政權의 成立과 崩壞」, 『高麗武人政權研究』(서강대출판부, 1995) 및 鄭修芽, 「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 같은 책 등 참조

를 이룬 元宗이 그간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이들 朝廷 臣僚에 대해 政治的 信賴를 갖기란 여간해서는 어려웠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렇다고 闕內에서 일하는 內侍가 왕의 절대적 신임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알다시피 高麗의 內侍는 흔히 세 部類로 구성되었다고 이해된다. 朝官 內侍·胥吏 內侍 및 散職 內侍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內侍의 中核을 이루는 것은 물론 文武官 出身의 朝官 內侍였다.²⁸⁾ 그런데 武人政權의 출발과 함께 이러한 內侍의 構成과 運營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본래 文官만으로 구성되던 朝官 內侍에 武班이 진출하면서 그 外延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內侍의 進退에 있어서도 왕의 信任 與否가 관건이던 전과는 달리 武人執政者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樣相은 武人政權의 確立期인 崔氏執權期에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內侍가 왕의 側近으로서 왕을 庇護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動靜을 감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政治的 機能과 性格 또한 상당히 變質되고 말았다.²⁹⁾

이후 金俊執權期라 해서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執政 武臣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內侍로 入屬하여 왕의 동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金俊執權期の 金周鼎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는 元宗 5년의 科擧에 及第하여 金俊의 海陽府에서 錄事와 典籤을 지내고 金俊의 특별한 寵愛와 推薦으로 內侍로 入屬하고 政房에 들어갔다 하는 바,³⁰⁾ 金周鼎의 內侍 入屬과 內侍로서의 활동 또한 崔氏執權期の 그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비록 이 밖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事例를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같은 유형의 內侍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林衍이 元宗을 廢立할 때 이에 반발한 內侍의 존재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執政 權臣이 추천하여 入屬시킨 몇몇 內侍의 감시로 왕과 다른 內侍들의 활동이 크게 견제되고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이런 朝廷 官僚 및 內侍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대로 宦官을 중심으로 하는 內

28) 金載名, 앞의 논문(2002-1).

29) 姜愛子, 앞의 논문(1965) 및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の武臣政權との關係」 『高麗朝官僚制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80).

30) 『高麗史』卷 104, 列傳 17, 金周鼎 104:44b(3:302).

僚의 경우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王權 恢復에 충성을 다하였는바, 그런 宦官에 대한 元宗의 信任이 절대적이었을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 元宗 말에 王命의 出納을 전적으로 이들 宦者에게 일임했다는 것³¹⁾도 실은 이 같은 這間의 사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高宗 때까지만 해도 엄격히 절제되었던 內僚의 參官 除授는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려웠다. 元宗 때 內僚의 限品制가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宦官의 參職 除授는 왕의 질병을 두 번씩이나 구원한 宦者 閔世冲을 元宗 元年에 6品官으로 올려 준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高麗史』 기록³²⁾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시작을 얘기한 것일 뿐, 宦官을 비롯한 內僚의 限品 解除는 아무래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곡절을 겪으면서 元宗 말부터 그들에 대한 論功行賞의 일환으로 적극 시도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 ‘본래는 內僚이지만 林衍이 金俊을 죽일 때의 功으로 許通되었다’고 하는 金子廷³³⁾이 그 좋은 실례일 것이다.

그러나 왕의 신임이 아무리 돈독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南班 內僚들의 限品 解除가 그렇게 용이했던 것만은 아니다. ‘祖宗之制’를 云云하는 朝廷 臣僚들의 반발과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金俊 除去 후 宦官들이 잠시 得勢하자 平章事 柳璥과 大司成 金坵 등이 戊辰政變에서의 宦官 功勞를 깎아내리다 論罪되기도 하였고,³⁴⁾ 元宗 말에는 內僚들이 王命出納을 오로지 한 것에 대해 洪子藩의 신랄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³⁵⁾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忠烈王 初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近來 內堅 出身의 微賤한 자들이 隨從한 功으로 仕路를 許通 받아 朝廷 官員의 班列에 섞이게 됨으로써 祖宗의 制度와 어긋남이 있으니 이미 내린 왕명을 거두어 달라’는 僉議府 上言이 나오기까지 했다.³⁶⁾ 물론 이러한 요청은 嘉納되지 않았고, 內僚의 參職 除授와 이에 따른 兩者의 葛藤은 이 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³⁷⁾

31) 『高麗史節要』卷 19, 元宗 12年 4月, 洪子藩 奏 19:6b(1:493) 및 『高麗史』卷 27, 世家 27, 元宗 3, 史臣 贊 27:50a(1:563).

32) 『高麗史』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宦寺之職, 元宗 元年 6月 75:20b(2:640).

33) 『高麗史』卷 28, 世家 28, 忠烈王 1, 3年 3月 乙卯 28:22b(1:574).

34) 『高麗史節要』卷 18, 元宗 10年 4月 18:34b-5a(1:479).

35) 『高麗史節要』卷 19, 元宗 12年 4月 19:6b(1:493).

36) 『高麗史』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限職, 忠烈王 2年 閏 3月 75:24b-5a(2:642-3).

사정이 이러했음을 볼 때 비록 限品이 풀렸다고 해도 內僚가 參職 除授와 함께 곧바로 朝廷의 官職, 즉 朝官으로 진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朝官들의 질서와 그에 따른 고립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따라서 한동안 參職을 띤 채 전과 다름없이 內僚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朝廷이 아닌 闕內에서 근무하면서도 朝官과 다를 바 없는 內侍職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忠烈王 4년 金周鼎이 內僚의 우두머리로 지칭한 大將軍 金子廷³⁸⁾이 前者의 예라면, 같은 해 內僚將軍·內僚郎將으로 각각 보이는 A-㉠-②의 李之氏와 A-㉠의 金天固는 後者の 예라 하겠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內侍郎將을 지낸 黃元吉³⁹⁾ 또한 忠烈王 乳母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內僚 出身의 內侍였다고 이해된다.⁴⁰⁾ 그리고 보면 비록 이들 세 사람 외에 內僚가 內侍로 진출한 다른 예를 찾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한 번 물꼬가 트인 內僚의 參職 除授와 內侍 進出은 여간해서 막기 어려운 대세였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이들 內僚의 內侍職 進出은 주로 參職으로서의 武班職에 집중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언급한 李之氏가 武班 4品職인 將軍이고, 金天固와 黃元吉은 6品職인 郎將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文班職을 띤 內侍는 職銜에 맞는 소정 官司의 고유한 직무까지를 수행해야 했던 만큼⁴¹⁾ 특별한 행정적 식견과 능력이 부족한 內僚 出身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元 干涉期에 크게 부상한 奴婢 出身의 政治人이 대체로 內僚를 거쳐 武班職으로, 다시 文班職으로 진출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갔다는 사실⁴²⁾도 이에 참고 된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종합해 보면 결국 高宗代까지만 해도 洒掃와 같은 宮中 雜事를 처리하던 南班의 內僚層이 그 末年부터 元宗 연간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정

37) 忠烈王 14년에 있는 宦官과 法司 官員의 충돌(『高麗史』 卷 30, 世家 30, 忠烈王 3, 14年 7月), 忠烈王 24년 內僚 李之氏를 兩府官에 임명하는 告身の 署經을 놓고 벌인 李之氏와 諫議大夫 趙簡의 대립(『高麗史』 卷 106, 列傳 19, 趙簡) 등이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38) 『高麗史』 卷 104, 列傳 17, 金周鼎 104:45b-6a(3:303).

39) 『高麗史』 卷 123, 列傳 36, 驍幸 1, 李汾禧 附 摺 123:16a(3:678).

40) 毅宗 때 宦者 鄭誠이 왕의 乳母를 아내로 맞이한 사실(『高麗史』 卷 122, 列傳 35, 宦者 鄭誠로 미루어 보아 乳母는 물론 그의 아들 또한 宦者에 비견되는 賤隸 出身으로 이해된다.

41) 金載名, 앞의 논문(2002-2).

42) 洪承基, 앞의 책, 356~368쪽.

치적 사건에서 功을 세워 소위 功臣勢力으로 부상하며 參職 進出이라는 정치적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였으나, 朝廷 臣僚들의 반발과 견제에 부딪치자 朝官으로의 직접적인 出仕는 잠시 유보하고 대신 內侍職, 그 중에서도 행정적 전문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武班 內侍職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면서 內侍, 특히 朝官內侍의 전체적인 外延이 한 단계 더 확대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忠烈王代를 前後하여 이처럼 內僚의 진출로 外延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內侍의 중심은 여전히 文武官, 그 중에서도 文官 出身이었다는 점이다. 文武班 內侍職을 지낸 인물들의 구체적이고도 많은 事例가 그러한 사실을 잘 입증한다. 여기서 元宗 10년부터 忠烈王 연간에 걸쳐 內侍를 역임한 인물 중 文武官 出身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뽑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人名	內侍職名	時期	典據
文 班 職	安 珣	○○○	元 宗 12년	列傳, p.322
	尹 諧	○○○	忠烈王 초년	列傳, p.346
	郭 預	佐郎	" 2년	世家, p.572
	金台鉉	江陰牧監	" 3년	集成, p.476
	趙 簡	書籍店錄事	" 6년	世家, p.593
	朴 莊	禮賓注簿	" 13년	集成, p.398
	金 怡	○○○	" 18년	列傳, p.376
	李彦冲	興信宮錄事	" 20년	集成, p.500
	崔 雲	都齋庫判官	" 22년	集成, p.453
	李季城	○○○	" 26년	集成, p.412
武 班 職	鄭仁卿	將軍	元 宗 13년	集成, p.424
	李 瑀	郎將	忠烈王 13년	集成, p.398
	金龍劔	郎將	" 17년	世家, p.626
	金 禕	別將	" 27년	集成, p.412
	金 倫	護軍(將軍)	" 31년	集成, p.423

* 內侍職 자체는 權務職이나 역임 인물이 文官인 경우 文班職으로 분류

* 世家·列傳: 高麗史 上·下(亞細亞文化社, 1990)

集成: 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 編著, 翰林大出版部, 1993)

III. 麗末 內侍의 成衆官으로의 變質

앞 장에서 論議한 그대로 元宗 말 이래 內僚의 參職 除授와 內侍職 進出로 內侍의 外延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이들 內僚 出身이 內侍의 中樞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忠烈王 때까지는 數的인 면에서 文武官, 그 중에서도 文官 出身의 內侍가 內僚 出身을 압도한 듯하며, 이에 따라 內侍制의 運營 또한 여전히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忠宣王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文獻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內侍 事例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특히 文官 出身으로 內侍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듯하다. 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忠肅王 8년 內侍成均學諭로 보이는 李繼英⁴³⁾이 文官 出身으로 內侍가 된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는 同正職을 띤 散職內侍로 파악되는 만큼 忠宣王 이후 文官 出身 內侍는 全無했다고 해도 과언일 아닐 듯싶다.

반면 忠宣王 이후 忠定王 때까지 武官으로서 內侍가 된 사례는 여럿 찾아진다. 가령 忠肅王 8년에 鄭責은 親禦軍大護軍으로 內侍를 지냈고,⁴⁴⁾ 忠肅王 13년 朴允鏐는 內侍保勝別將으로 있었으며,⁴⁵⁾ 이듬해에는 崔宰가 內侍散員으로 발탁된 바 있다.⁴⁶⁾ 특히 崔宰는 散員이 되기 전 4년간 內侍로서 權務職인 東大悲院錄事를 지냈는데, 이는 <표 1>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제까지 權務職의 內侍를 주로 文官이 맡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文官 출신의 內侍 事例를 거의 찾을 수 없는 반면에 여지껏 그들이 담당했던 職任을 이처럼 武官 출신의 內侍가 맡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 무렵 內侍制 運營의 중심이 이전의 文官에서 武官 출신에게로 옮겨졌음을 시사하는 端初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비록 확실히 內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武官으로서 內侍院 일을 총괄했다고 추정되는 사례를 통해서도 재차 입증된다고 본다. 忠肅王 初년에 上護軍으로 幹辦內侍院事란 職을 맡은 裒廷

43)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216 「尹瑋妻朴氏墓誌銘」, 438~439쪽.

44) 위의 책, 217 「金恂墓誌銘」, 441 쪽

45) 위의 책, 225 「閔漬墓誌銘」, 460 쪽

46) 위의 책, 286 「崔宰墓誌銘」, 596 쪽

芝⁴⁷⁾와 忠肅王 復位 8년에 鷹揚軍大護軍으로서 역시 幹辦內侍院事가 된 金承嗣⁴⁸⁾가 그들이다. 幹辦內侍院事의 관료적 위상과 역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前期 이래 內侍의 最高位職이 從3品, 그러니까 武班職으로는 大將軍(大護軍)까지였다는 점⁴⁹⁾을 고려할 때 文字 그대로 內侍院의 總責任者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면 이처럼 忠烈王 말까지만 해도 여러 문헌에서 꽤 많이 보이던 文官 出身 內侍의 예가 忠宣王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춘 까닭은 무엇인가. 물론 관련 자료의 미비를 탓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忠烈王의 薨逝 직후 忠宣王에 의해 단행되었던 內侍의 革罷 조치이다. 즉,

B-㉠ 왕이 命을 내려 近侍와 茶房을 革罷하였다⁵⁰⁾

고 하여 忠宣王은 復位年 初에 ‘近侍’를 일시 革罷한 일이 있다. 여기서의 近侍가 우리가 논의하는 內侍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다른 資料에서는 이를 ‘內侍’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⁵¹⁾에서 자명하다.

그런데 忠宣王의 이 같은 內侍 革罷는 革罷 事實 자체도 그렇거니와 그 시점 또한 중요한 관심 사항의 하나이다. 忠烈王이 薨逝할 때 忠宣王은 元의 燕京에 있었다. 그러다 訃音을 듣고 급거 귀국하던 도중 이 같은 王命을 내렸는바, 父王의 葬禮는 물론이고 復位式도 치르기도 전에 그야말로 신속하고도 전격적으로 혁파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 忠宣王이 그렇게 서둘러 內侍를 革罷해야만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한데 이와 관련하여 內僚 출신의 內侍에 대한 忠宣王의 宿憾과 그만의 독특한 政治行態로 알려진 傳旨政治가 관심을 끈다.

世子 시절부터 宦者를 비롯한 賤隸 出身의 內僚에 대한 忠宣王의 정치적 인식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父王인 忠烈王을 둘러싸고 갖가지 惡行을 일삼는다는 것이

47) 위의 책, 218 「裒廷芝墓誌銘」, 444 쪽

48) 위의 책, 246 「金深墓誌銘」, 503 쪽

49) 金載名, 앞의 논문(2002-2).

50) 『高麗史』 卷 33, 世家 33, 忠宣王 1, 復位年 8月 乙未 33:17b(1:678).

51) 『高麗史』 卷 108, 列傳 21, 李混 108:8b-9a(3:373-4).

그 이유였다. 일례로 忠烈王 14년에는 5가지 非行을 거론하며 宦者 崔世延을 심하게 꾸짖고 갈등을 빚더니,⁵²⁾ 그 23년에는 마침내 父王의 만류와 母后의 喪中에도 불구하고 崔世延 一黨을 誅殺하기에 이른다.⁵³⁾ 물론 이 때문에 忠宣王 또한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內僚를 포함한 忠烈王의 嬖幸들이 획책한 趙妃誣告事件과 薊國公主改嫁運動 등으로 한동안 시달려야만 했다.⁵⁴⁾

그리고 內僚에 대한 忠宣王의 이 같은 否定的 認識은 忠烈王 이후 이들이 많이 진출한 內侍에게까지 확산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忠烈王 9년에 忠宣王은 더 많은 土地의 賜給을 요청하며 탐욕을 부린 內僚 출신의 內侍 李之氏를 꾸짖은 일이 있는 바,⁵⁵⁾ 9살의 어린 나이에도 이러한 의식을 지녔던 만큼 그로서는 이런 內僚 출신의 內侍를 內侍로서보다는 內僚의 存在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며, 이 같은 內侍의 數가 적지 않았던 內侍 集團을 우호적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忠宣王이 급거 歸國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內侍를 革罷한 것은 아마도 이들 內侍를 포함한 內僚層이 그 사이에라도 꾸밀지 모르는 어떤 정치적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復位 전부터 생각해 왔던 傳旨政治에 대한 構想 또한 이와 같은 內侍 革罷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알다시피 忠宣王은 5년의 在位 기간 대부분을 元의 燕京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國內의 政事는 側近에게 傳旨을 내려 처리하는 이른바 傳旨政治를 택했다.⁵⁶⁾ 사실 이런 정치 상황에서는 빈 宮闕만 지키고 있을 宮內職으로서의 內侍는 전혀 불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父王의 葬禮를 마치자마자 곧 元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면⁵⁷⁾ 忠宣王은 당초부터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元都에서의 傳旨政治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忠宣王에게 있어 오랜 宿憾만 있고 機能 또한 상실하고 말 內侍를 存置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겠다. 앞서 소개한 B-㉠의 內侍 革罷는 바로 이 같은 정치적 요인이 복합

52) 『高麗史』 卷 122, 列傳 35, 宦者 崔世延 122:16b(3:663).

53) 『高麗史節要』 卷 21, 忠烈王 23年 7月 21:48ab(1:563).

54) 이에 대해서는 金成俊, 「高麗後期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 位置」,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一潮閣, 1985) 참조

55) 『高麗史節要』 卷 20, 忠烈王 9年 8月 20:44b-5a(1:536-7).

56) 이에 대해서는 李昇漢, 「高麗 忠宣王의 瀋陽王 被封과 在元 政治活動」, 『全南史學』 2(1988) 참조

57) 『高麗史』 卷 33, 世家 33, 忠宣王 1, 復位年 11月 壬申 33:26a(1:682).

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이해된다.

忠宣王 復位年의 이 같은 혁파 조치는 高麗 內侍制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비록,

B-㉠ 傳達된 教旨에 이르기를 “또 전에 혁파한 近侍·茶房·三官·五軍을 모두 복구토록 하라”고 하였다. 당시 洪重喜가 (왕이) 마음대로 官號를 고쳤다고 元나라 中書省에 告訴한 까닭에 이런 王命이 있게 되었다.⁵⁸⁾

고 하여 廢止된 지 7개월만에 복구되기는 했지만 前期 이래 여러 차례의 曲折을 겪으면서도 그 骨幹을 유지해 온 高麗의 內侍制를 크게 變質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B-㉠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 때의 內侍制 復舊는 결코 왕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內侍制 革罷로 失職한 官僚들의 거센 반발과 원망,⁵⁹⁾ 그리고 이에 따른 元의 干涉이 復置의 유일한 이유였다. 革罷의 要因이 된 정치적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를 復置해야만 할 새로운 필요성이 생긴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비록 復置되었다 하더라도 內侍 組織은 여전히 왕의 신임을 얻기 어려웠고, 이는 곧 內侍가 官職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알다시피 內侍는 왕의 각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으며 다른 朝官에 비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던 관직이었다.⁶⁰⁾ 그런 內侍가 이제 신임을 받기는커녕 冗官으로 인식되어 혁파되었다가 겨우 元의 干涉으로 復舊되었는바, 이의 관료적 위상이 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前期 이래 줄곧 內侍가 맡아 오던 左·右倉 등 여러 倉庫의 管理마저 忠宣王 初의 官制 改編에서 朝官에게 넘기도록 했음을 보면 이 무렵 內侍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축소된 것⁶¹⁾은 분명한 사실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혁파와 함께 原所屬의 朝官職으로 일단 復歸했던 內

58) 『高麗史』 卷 33, 世家 33, 忠宣王 1, 元年 3月 丁未 33:27b(1:683).

59) 『高麗史』 卷 108, 列傳 21, 李混 108:8b-9a(3:373-4).

60) 金載名, 「高麗 內侍制 運營의 一面」, 『清溪史學』, 18(2003).

61) 金載名, 「高麗後期 王室財政의 二重의 構造」, 『震檀學報』, 89(2000) 참조

侍,62) 특히 유능한 文官 出身은 復置된 이후 內侍職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적극 회피했을 가능성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는 곧 이후 餘他 文官 出身 朝官들의 內侍 進出을 단절시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갔을 것이다. 冗官으로 치부되고 왕의 신임을 상실한 관직으로의 진출을 유능한 관료, 그것도 文官 出身이 기꺼워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같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한 忠宣王의 統治가 在位 및 上王으로서의 攝政까지를 포함하여 10여년간 지속되면서 內侍에 대한 文臣 官僚들의 否定的 認識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판단된다.

忠宣王 이후 文官 出身 內侍의 예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這間의 사정에서 기인한다.63) 따라서 이로부터 內侍의 중심은 자연히 武官 出身에게로 옮겨졌다고 이해되며,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忠肅王 연간에 각각 上護軍·大護軍으로서 內侍院의 總責任者인 幹辦內侍院事를 맡은 裒廷芝와 金承嗣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리고 이 같은 變化의 와중에서 文官 出身이 기피하던 內侍職은 內僚의 몫으로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록 구체적인 사례는 보이지 않으나, 앞서 論及한 대로 忠烈王代를 前後한 시기부터 많은 內僚가 參職 除授와 함께 內侍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였는바, 이런 그들이 忠宣王 初年 이후 도래한 好期를 외면하거나 놓쳤을 리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高麗의 內侍制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高麗 內侍 組織의 中樞를 이루는 朝官內侍는 당초 文官 出身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武人執權期에 武官이, 元干涉期에는 內僚 出身이 여기에 새로 참여함으로써 外延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이의 主軸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文官 出身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文官은 완전히 배제된 채 武官 및 內僚 出身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무엇

62) 金載名, 앞의 논문(2003) 참조

6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잠시 소개한 바 있는 忠肅王 8년의 內侍成均學諭 李繼英의 사례는 아주 뜻밖이라 하겠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散職內侍가 분명함에도 그냥 ‘內侍內衣直長’으로만 표기한 墓誌銘의 사례(金龍善 編著, 앞의 책, 247 「全信墓誌銘」, 505 쪽)가 있고 보면 李繼英 또한 散職內侍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논의한 맥락으로 보아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이해라고 믿는다. 全信의 官歷인 ‘內侍內衣直長 이 실제로는 ‘內侍內衣直長同正’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金載名, 앞의 논문(2002-1), 註99 참조

보다도 內侍를 매개로 한 왕의 國政 掌握力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文官 出身의 朝官內侍는 그들의 고유한 직무 수행을 통해 주로 文班 官署 위주로 편성되고 운영되던 國政에 왕의 의지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바,⁶⁴⁾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방식의 國政 統制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高麗 內侍의 본래적 모습과 성격이 크게 變質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비록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기는 했지만 高麗의 內侍制는 麗末까지 줄곧 존속하였다. 恭愍王 이후에도 적지 않게 보이는 內侍의 事例와 用例가 그런 사실을 잘 말해 준다. 恭愍王 7년 玄德宮婢와 通情한 內侍 李邦貴⁶⁵⁾라든가, 同王 17년 上將軍 李得霖에게 결박을 당한 채 매를 맞은 內侍別監,⁶⁶⁾ 같은 무렵 嬖幸 金興慶이 왕의 질책을 받고 그 분풀이로 구타했다는 內侍 宋良哲,⁶⁷⁾ 그리고 禡王 2년 倭寇의 都城 侵寇를 방어하기 위해 거의 모든 官僚를 동원할 때도 內侍를 포함한 몇몇 부류만은 예외로 했던 일⁶⁸⁾ 등이 그 좋은 실례라 하겠다. 또한 이런 內侍 및 그 소속 기구로서의 內侍院은 鮮初의 기록에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 바,⁶⁹⁾ 麗末 內侍의 존재는 더욱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그런데 鮮初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이 같은 恭愍王 이후의 內侍 事例와 用例에는 武官 出身 內侍의 예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內侍別將’이나 ‘內侍護軍 將軍’ 과 같이 구체적으로 武班 職銜을 띤 內侍의 사례는 물론이고 武班職 內侍라고 추정해 볼만한 용례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內僚 出身의 內侍로 간주할만한 예가 있는 것도 아니다. 資料의 未備가 이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

64) 金載名, 앞의 논문(2002-2).

65) 『高麗史』 卷 39, 世家 39, 恭愍王 2, 7年 10月 庚午 39:25a(1:781).

66) 『高麗史』 卷 132, 列傳 45, 叛逆 6, 辛旽 132:13b(3:861).

67) 『高麗史』 卷 124, 列傳 37, 嬖幸 2, 金興慶 124:32b(3:704).

68) 『高麗史』 卷 82, 志 36, 兵 2, 鎮戍 82:8b-9a(2:797-8).

69) 闕內에서 信符를 차야 할 部類의 하나로 거론된 內侍院抄(『世宗實錄』 卷 19, 5年2月 辛酉 와 國家的 祭祀에서 祝香을 담당토록 되어 있는 內侍別監(『世宗實錄』 卷 89, 22年 5月 癸丑) 등의 資料는 오히려 그 일례에 불과하며, 이 밖에도 鮮初의 實錄에는 內侍院에서 개칭된 內直院이 革罷되는 世祖 12년(『世祖實錄』 卷 38, 12年 正月 壬子)까지 20여개의 관련 기사가 보인다. 鮮初의 內侍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韓永愚, 앞의 논문(1971) 참조.

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이와는 달리 이 무렵에 內侍의 주축이 品外의 成衆官이었음을 시사하는 資料는 더러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內侍를 茶房 및 司楯·司衣·司彝와 같은 成衆愛馬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의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두 차례에 걸쳐 역설한 恭讓王 때의 吏曹 啓文⁷⁰⁾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처럼 品外의 成衆官인 만큼 麗末 內侍의 官僚的 成分은 胥吏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점 이미 先行 研究에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⁷¹⁾ 다음의 두 資料를 통해 더욱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B-㉠ 議政府錄事 金尙呂 등이 上言하기를, “內直·司樽으로부터 養賢庫의 錄事, 戶曹의 重監에 이르기까지 모두 紗帽를 착용하는데 유독 저희들만 角이 있는 頭巾(有角頭巾)을 쓰게 한 것은 前朝의 弊習을 오히려 답습한 것이오니 심히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紗帽를 착용토록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했으나 允許하지 않았다⁷²⁾

㉡ (禡王) 13년 6월에 비로소 胡服을 革罷하고 明의 제도를 따랐다. … 指諭, 行首, 內侍, 茶房 및 王命을 받고 밖에 나가는 자는 東班이거나 西班이거나 現職이거나 散官이거나를 막론하고 參上이면 紗帽에 品帶를 하고 參外이면 紗帽에 角帶를 띤다. … 三都監과 五軍의 錄事, 宰樞所의 知印은 有角頭巾을 쓴다.⁷³⁾

B-㉡에 보이는 內直과 司樽은 이전의 內侍와 茶房을 각각 世宗 때 개칭한 것이 거니와,⁷⁴⁾ 따라서 B-㉠에서 金尙呂가 말하는 ‘前朝의 弊習’이란 곧 三都監과 五軍의 錄事 및 宰樞所의 知印에게 有角頭巾을 쓰도록 한 禡王 13년의 사실을 가리키

70)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成衆官選補之法, 恭讓王 2年 및 3年 75:41b-2b(2:651). 恭讓王 3년의 啓文에는 ‘成衆官 內侍로서 소정의 임기를 마치면(仕滿) 朝官으로 발탁하는 제도의 문 제점이 언급되어 있는 바, 이는 곧 成衆官 內侍가 品官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71) 韓永愚, 앞의 논문(1971).

72) 『世宗實錄』 卷 119, 30年 正月 辛卯 119:1a(5:48).

73) 『高麗史』 卷 72, 志 26, 輿服, 冠服通制 72:13ab(2:567).

74) 『世宗實錄』 卷 108, 27年 4月 庚午 108:10b(4:617) 및 卷 115, 29年 2月 丙辰 115:15a(5:8).

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B-㉔에는 B-㉔에서 말하는 議政府(都評議使司)의 錄事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恭愍王 元년에 5軍의 錄事들로 하여금 都評議使司의 文書를 관리토록 한 사실⁷⁵⁾이 있고 보면, B-㉔에서 議政府錄事 金尙呂가 內侍·茶房·重監과는 달리 자신들만 角頭巾을 쓰게 했다고 불평한 前朝의 弊習은 아무래도 이 五軍錄事の 角頭巾 着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⁷⁶⁾

이렇게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B-㉔과 ㉔이 상징하는 麗末과 鮮初의 內侍는 일단 그 實體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B-㉔의 金尙呂의 주장은 鮮初의 內侍가 議政府錄事나 戶曹重監과 同類的 存在, 즉 같은 胥吏임에도 불구하고 冠服 착용에서 차별을 둔 데 대한 불평이다. 따라서 B-㉔의 麗末 內侍는 결국 胥吏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나아가 冠服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이런 內侍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禡王 때는 이미 內侍의 중심이 胥吏 出身으로 바뀌어져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이해된다.

앞서 소개했던 恭愍王代 이후의 內侍, 특히 權臣들로부터 매질을 당한 두 명의 內侍 사례 또한 이 같은 이해를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한다고 본다. 물론 이들이 胥吏였음을 입증할 사료적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權臣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結縛을 당한 채 심한 매를 맞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武官 出身의 品官으로 보기는 좀 주저된다. 아무래도 그런 대우를 받기로는 品官보다는 官僚의 位相이 낮은 胥吏의 存在가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鮮初에도 ‘內侍別監’이 대표적인 胥吏 出身의 成衆官이었음을⁷⁷⁾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간 內侍의 주축을 이루던 武官 및 內僚 出身의 內侍가 사라지고 恭愍王 이후 이처럼 胥吏 出身의 成衆官 內侍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곧 恭愍王 5년에 있던 忠勇衛의 설치와 宦官制의 정비인 바,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恭愍王 5년은 오랜 元의 干涉에서 벗어나고자 自主的 反元政策을 적극 추진하던 해였다. 우선 5월에 奇轍·權謙 등으로 대표되는 附元勢力을 제거

75)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77:22b(2:690).

76) 여기서 鮮初의 代表的 成衆官인 議政府錄事の 沿革까지 穿鑿할 겨를은 없으나, 아마도 恭愍王 때의 이 五軍錄事가 그 始原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7) 韓永愚, 앞의 논문(1971).

한 뒤, 이어 征東行省理問所를 革罷하고 雙城總管府를 회복하는가 하면 元의 年號 사용을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7월에는 그간 元의 압력으로 격하된 官制를 文宗 때의 舊制로 복구시키는 官制改革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상실된 自主性을 회복하고 위축된 王權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바, 이 무렵에 이런 일련의 改革政治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軍事組織이 곧 忠勇衛였다.⁷⁸⁾

바로 이 같은 忠勇衛의 설치가 麗末에 高麗의 內侍制를 또 한 차례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四衛로 편성된 忠勇衛에는 衛마다 將軍 1명, 中郎將 2명, 郎將 2명, 別將 5명, 散員 5명, 尉長 20명, 隊長 40명씩 총 300명의 將校를 두었다고 하는 바,⁷⁹⁾ 이에 필요한 인원을 武班職 內侍로 우선 충원함으로써 武官 內侍가 소멸되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사실 忠勇衛는 禁衛 즉 왕과 왕실의 扈衛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 만큼⁸⁰⁾ 믿을 만한 인물로만 충원하고자 했을 터이며, 따라서 그간 近侍와 宿衛에 종사해 오던 武官 出身의 內侍가 이에 아주 제격이었다고 본다. 나아가 忠宣王 이래 內侍의 중심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 機能과 位相이 크게 저하되어 있던 武班 出身의 內侍를 王權 強化를 위한 親衛軍 組織으로 독립시키면서 확대 개편한 것이 곧 忠勇衛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⁸¹⁾ 恭愍王 이후 武官 內侍의 事例는 全無한 반면에 名門家의 後裔로서 忠勇衛別將을 지낸 인물의 예⁸²⁾는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이해에 참고 된다.

한편 恭愍王 5년에는 이러한 忠勇衛의 설치와 함께 宦官制度의 정비도 아울러

78) 李永東, 「忠勇衛考」, 『陸軍第三士官學校論文集』, 13(1981).

79)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2, 西班 忠勇四衛 77:33ab(2:696) 및 『高麗史』 卷 81, 志 35, 兵 1, 兵制 五軍, 恭愍王 5年 11月 81:19ab(2:784). 忠勇衛의 部隊 構成에 대해서는 현재 약간의 논란이 있다. 每衛마다 75명씩 총 300명의 將校만으로 구성된 부대였다는 주장도 있고(權寧國 「高麗後期 軍事制度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5), 이들 麾下에 各 衛別로 1,000명씩 都合 4,000명의 兵力을 구비한 부대였다는 견해도 있다(李基白, 『高麗史 兵志 譯註(一)』, 高麗史研究會, 1969, 106 쪽).

80) 『高麗史』 卷 81, 志 35, 兵 1, 兵制 五軍, 恭讓王 元年 12月 憲司上疏 81:33ab(2:791).

81) 물론 분명한 典據를 제시하지 못한 채 궁색한 論理的 推論으로 일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全無한 상태에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恭愍王代 이후 武官 內侍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成衆官 內侍가 內侍의 中核을 이루게 된 사실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推論을 전혀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82) 金龍善 編著, 앞의 책, 273 「金台鉉妻王氏墓誌銘」, 559 쪽

추진되었는바, 이 또한 麗末의 內侍制 變化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이해된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별다른 소속 기구도 없이 南班職의 一員으로 홀대를 받던 高麗의 宦官이 그들만의 독립된 官府로서 內侍府를 구비하게 된 것은 恭愍王 때의 일이다. 대략 11년 이후의 일로 추정되는데,⁸³⁾ 이에 앞서 5년에 職制 改編을 통해 內詹事로부터 奚官令에 이르는 7개의 관직을 두게 된 것이다.⁸⁴⁾ 당시 이들 官職의 정확한 官品을 잘 알 수는 없으나, 후일 內侍府의 설립과 함께 재정비된 職制에 비추어 보건대 최소한 內承直 이상의 네 官職은 6품 이상의 參職이었음이 분명하며,⁸⁵⁾ 최고위직인 內詹事は 아마도 2~3품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宦官들만의 독립된 官府가 설립되고 거기에 6품 이상의 參職이 다수 설치되었다는 것은 宦官을 중심으로 한 內僚 出身 內侍의 動向과 관련하여 꽤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參職 除授를 위해 더 이상 武班職이나 內侍로의 진출을 모색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기왕의 그런 宦官들까지 다시 宦官 職制로 吸收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恭愍王 연간의 內侍府 設立과 宦官制 整備의 裏面에는 실로 이런 目的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다음에 소개하는 資料는 이러한 筆者의 이해가 막연한 추론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한다. 즉,

B-㉔ 諫官 李崇仁이 말하기를, “官廳을 세우고 官職을 나누어 둔 것은 각각 그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先王께서 內侍府를 설치하고 中官(宦官)을 대우한 것이니, 이는 法典으로 되어 있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內侍府를 다시 설치하여 장차 宦官 중에서 조심하고 謹慎한 사람을 品

83) 흔히 內侍府의 성립을 恭愍王 5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高麗史』 百官志 內侍府條의 記事에 의하면 이 해에는 內詹事を 비롯하여 內常侍·內侍監·內承直·內給事·宮闈丞·奚官令 등 7개의 벼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宦官職 改編이 있었을 뿐이다. 이어 ‘後置內侍府’라 하여 內侍府의 설치는 그 후의 사실로 기술하고 있고, 內侍府 設立 이후의 職制에는 없는 內詹事の 用例가 그 11년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高麗史』 卷 40, 世家 40, 恭愍王 3, 11年 正月)에서 內侍府의 설치는 아무래도 이 이후의 일로 여겨진다.

84)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2, 內侍府 77:16b-7b(2:687-8).

85) 內侍府 設立 이후 正2品の 判事로부터 從9品の 通事に 이르는 다양한 品階의 官職이 두어졌는바, 5~6品の 左·右承直과 左·右副承直 등은 그 職名으로 보아 이전의 內承直이 細分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恭愍王 5년의 職制에서 內承直을 포함하여 이보다 높은 內侍監·內常侍·內詹事 등이 參職이었음은 물론이라 하겠다.

階에 따라 轉用해 쓰시고 朝官일랑 授與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⁶⁾

고 하는 李崇仁의 論旨를 穿鑿해 보면 恭愍王 때의 內侍府 設立과 그에 앞선 宦官制의 정비는 확실히 宦官의 朝官 進出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를 宦官 勢力의 政治的 成長의 결과물로 보는 견해⁸⁷⁾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內侍府가 혁파된 禡王 때에는 宦官 出身으로 宰相職인 贊成事商議에까지 오른 예⁸⁸⁾를 비롯하여 宦官의 朝官 進出이 매우 활발했음⁸⁹⁾을 보면 前者의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恭愍王 5년의 宦官制 整備와 이어지는 內侍府의 設립을 계기로 하여 그 때까지만 해도 지속되던 宦官 및 內僚의 內侍職 進出 또한 비로소 단절되었다고 이해해서 잘못은 아닐 것이다.

恭愍王 이후의 麗末에 武班職 內侍의 예는 全無하고 胥吏 出身의 內侍로 이해되는 用例만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같은 這間의 사정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 武班職 內侍가 떠나고 난 빈 자리에 대신

B-④ 吏曹가 또 啓하기를, “內侍·茶房·司楯·司衣·司彝 등 成衆阿幕은 宿衛와 近侍의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니 잘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그 世籍과 才藝·容貌를 상고하여 入屬을 허락하였는데, 근래에는 軍役을 피하려는 자가 서로 다투어 들어와 있어 간혹 世籍도 분명치 않고 容貌도 변변치 못하며 才能도 없는 사람(才藝不通者)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⁹⁰⁾

는 내용의 吏曹 啓文에서 보듯이 軍役을 회피하려는 寒微한 家門의 才藝不通者들이 대거 充원되면서 高麗의 內侍는 이제 胥吏類의 成衆官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86)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宦寺之職, 辛禡 6年 6月 75:21a(2:641).

87) 李愚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對하여」, 『史學研究』 1(1958).

88) 『高麗史』 卷 135, 列傳 48, 辛禡 3, 10年 9月 135:27a(3:919).

89)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와 내용은 李愚喆, 앞의 논문(1958), 32~33쪽 참조.

90) 『高麗史』 卷 75, 志 29, 選舉 3, 成衆官選補之法, 恭讓王 3年 4月 75:41b-2a(2:651).

하겠다.⁹¹⁾

IV. 맺 음 말

지금까지 元 干涉期 이후의 高麗 後期에 高麗의 內侍制가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간 모습을 內僚의 內侍職 進出과 이에 이은 內侍의 成衆官으로의 變質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았는바,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흔히 高麗의 內侍는 세 부류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朝官內侍, 胥吏內侍 및 散職內侍가 바로 그것인 바, 中核을 이루는 것은 물론 文武官 出身의 朝官 內侍였다. 그리고 이러한 朝官內侍는 본래 毅宗 때까지만 해도 文官만이 될 수 있었으나, 武人政權 이후로는 武官도 이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그 外延이 일차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忠烈王 初年을 전후하여 이의 成分 構成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일어났다. 賤隸 출신의 南班職인 內僚가 새로 內侍에 入屬하기 시작하면서 朝官內侍의 범주가 좀더 확대되었던 것이다.

武人執權期 말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政變이 이 轉機였는 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崔瑄의 誅殺, 金俊의 除去, 元宗의 廢立와 復位, 그리고 王政復古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서 宦官을 비롯한 內僚 出身이 여러 차례 큰 功을 세우자 왕은 이에 대한 論功行賞으로 그간 엄격히 지켜 오던 限品の 規제를 풀고 이들에게 參職을 除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朝廷 臣僚들의 반발과 견제 또한 만만치 않았으므로 參職을 받았다 해서 곧바로 朝官으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內僚와 마찬가지로 闕內에 근무하면서도 朝官과 다를 바 없는 內侍, 그 중에서도 學問的 識見이나 行政 能力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는 武班職 內侍로의 進出을 적극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忠烈王 年間을 전후하여 이처럼 內僚의 진출을 계기로 그 外延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內侍의 중심은 여전히 文官 출신이었다. 그러던 것이 忠宣王 이후로는 武官 출신에게로 옮겨졌다. 宦者를 비롯한 內僚 出身 內

91) 따라서 恭愍王 때의 內侍府 設立을 계기로 그간 文武官이 주축을 이루던 內侍가 宦官 內侍로 바뀌었다고 본 일부의 誤解 또한 이제는 拂拭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侍에 대해 世子 시절부터 가졌던 忠宣王의 비관적 인식과 소위 傳旨政治에 대한 구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王 復位年에 단행된 內侍의 革罷 조치가 그 轉機였다. 물론 폐지 7개월만에 가까스로 복구되기는 했으나, 왕의 信任을 상실한 尙官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유능한 文官 출신은 內侍가 되기를 주저하였고, 그 빈 자리를 內僚 출신이 채우게 되면서 자연스레 武官 또는 內僚 출신이 맡는 武班職 內侍가 이의 中樞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文班職 內侍를 매개로 朝廷을 적절히 통제하던 왕의 國政 掌握力도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高麗 內侍의 본래적 모습과 성격 또한 크게 변질되었다고 이해된다. 忠宣王 이후로 文官 出身 內侍의 예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忠宣王 때 한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은 高麗의 內侍制는 恭愍王 연간에 이르러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武官 및 內僚 出身으로 이루어진 武班職 內侍마저 사라지고 胥吏 출신의 成衆官 內侍가 이의 주축이 되었는바, 恭愍王 5년에 있는 忠勇衛의 설치와 宦官制의 정비가 그 계기였다고 이해된다. 즉 親衛軍인 忠勇衛의 설립과 함께 武官 출신의 內侍는 이의 將校로 편입되고, 參職을 갖춘 宦官 職制의 정비로 內僚 출신은 宦官의 參職으로 흡수되면서 內侍는 드디어 胥吏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 이들 武班職 內侍가 떠난 자리에 軍役을 회피하려는 寒微한 인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끝내는 成衆官으로 변모하여 鮮初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高麗의 內侍制는 ①前期에 文官 出身만으로 구성되는 朝官內侍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②武人執權期와 元 干涉期 初를 거치면서 武官 및 內僚에까지 그 外延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더니, 이어 ③忠宣王 初년에 內侍가 잠시 革罷되었다가 復置되는 과정에서 文官 출신이 먼저 배제되고 ④恭愍王 연간의 忠勇衛 設置와 宦官制 整備를 계기로 武官 및 內僚 출신의 武班職 內侍마저 소멸된 채 胥吏 출신의 成衆官 內侍가 이의 主軸을 이루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姜愛子, 「高麗時代の 內侍에 對하여」, 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1965.
- 權寧國, 「高麗後期 軍事制度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5.
- 金塘澤, 「林衍政權과 고려의 開京遷都」 『高麗의 武人政權』 서울: 國學資料院, 1999, 387~415쪽.
- 金成俊, 「高麗後期 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的 位置」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5, 150~187쪽.
-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춘천: 翰林大出版部, 1993.
- 金載名, 「高麗後期 王室財政의 二重的 構造」 『震檀學報』 89, 2000, 53~87쪽.
- 金載名, 「高麗時代の 內侍」 『歷史教育』 81, 2002, 81~109쪽.
- 金載名, 「高麗時代の 朝官內侍」 『정신문화연구』 88, 2002, 61~87쪽.
- 金載名, 「高麗 內侍制 運營의 一面」 『淸溪史學』 18, 2003, 95~114쪽.
- 金昌洙, 「成衆愛馬考」 『東國史學』 9·10, 1966, 17~36쪽.
- 金昌洙, 「麗代 內侍의 身分」 『東國史學』 11, 1969, 127~140쪽.
- 朴漢男, 「高麗內侍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2.
- 李基白, 『高麗史 兵志 譯註(一)』, 高麗史研究會, 1969.
- 李昇漢, 「高麗 忠宣王의 瀋陽王 被封과 在元 政治活動」 『全南史學』 2, 1988, 23~73쪽.
- 李永東, 「忠勇衛考」 『陸軍第三士官學校論文集』 13, 1981, 9~31쪽.
- 李愚喆, 「高麗時代の 宦官에 對하여」 『史學研究』 1, 1958, 18~44쪽.
- 張熙興, 「朝鮮前期 內侍府에 對한 考察」 『金甲周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94, 491~527쪽.
- 鄭修芽, 「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출판부, 1995, 274~308쪽.
- 崔元榮, 「林氏武人政權의 成立과 崩壞」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출판부, 1995, 309~346쪽.
- 韓永愚, 「朝鮮初期의 上級胥吏 成衆官」 『東亞文化』 10, 1971, 3~88쪽.
- 洪承基,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서울: 一潮閣, 1983.
- 周藤吉之, 「高麗初期의 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의 武臣政權との關係」 『高麗朝官僚制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80, 465~494쪽.
- 矢木毅, 「高麗時代の內侍と內僚」 『朝鮮學報』 184, 2002, 43~76쪽.

● 투고일: 2003. 8. 19

● 심사완료일: 2003. 12. 1

● 주제어(key word): Naesi(內侍), Jokwannaesi(朝官內侍), Naeryo(內僚), Söri(胥吏),
Söngjungwan(成衆官)